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등〉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27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등	3
2. 행정상 강제에 대한 「행정기본법」 적용 명확화	9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

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の方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접강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집행시 집행책임자의 증표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직접강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 명시 등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중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사업의 정지나 폐지</u> 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 ----- ----- ----- ----- <u>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20조¹⁾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4조²⁾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를 거부하거나³⁾,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하는 보고 또는 조사·검사 등 감독권한을 회피 또는 방해한 경우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기본법」⁵⁾ 제22조⁶⁾는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
-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감독)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5)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2021. 3.23. 제정·시행되었음.

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사업 정지 및 폐지 등의 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3항7),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⁸⁾

-
- 6)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및 별표4([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9)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및 종류(사업 정지나 폐지, 시설 폐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와 동일하지 않는데, 그 처분의 세부기준은 명확한 근거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고 있어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

9)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입법례를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¹⁰⁾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법적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는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에 관한 처분의 세부 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2. 행정상 강제에 대한 「행정기본법」 적용 명확화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② (생략) <u>③ (생 략)</u> <u>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u>

「행정기본법」 제32조¹¹⁾는 행정상 강제¹²⁾ 중 직접강제에 관한 사

- 11)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2)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항을 규정하고 있음.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임.

현행법 제24조제1항은 제재처분의 종류로 사업의 정지나 폐지 명령과 시설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의 폐쇄는 행정상 직접강제에 해당함.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폐쇄 조치시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제5조¹³⁾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적용되나,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대상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및 법률의 적용 관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은 각종 행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유사·공통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국민과 일선 공무원 등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행정기본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직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보충성·최소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시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집행책임자의 증표제시), 미리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문서로 계고하도록 하며, 직접강제의 시기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이행기간 부여, 계고, 통지 등)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직접강제 절차를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법 제40조제1항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제1호 법 제40조제1항 제2호 법 제40조제1항 제3호 법 제40조제1항 제4호 법 제40조제1항 제4호 법 제40조제1항 제4호 법 제40조제1항 제4호 법 제40조제1항 제4호 법 제40조제1항 제5호 법 제40조제1항 제6호 법 제40조제1항 제7호 법 제40조제1항 제8호 법 제40조제1항	시설 폐쇄 시설 폐쇄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	---	--	---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나.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다.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9호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시설 폐쇄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 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시설 폐쇄 시설 폐쇄 시설 폐쇄
--	----------------------------------	---	---	--